

이천시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9. 12.
제출자 : 이천시장

개정이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구분되었던 두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1998. 2. 24 대통령령제15680호)으로 통합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증 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여비의 지급구분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여비지급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함(안 제3조)
- 나. 종전 국내·외여비규정으로 준용하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

이천시여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의 직 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 소속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이천시관용차량종합관리규정 제3조”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종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종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종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정한다.

[별표 제2호] 여비란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이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이천시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이천시장”으로 본다.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위원장과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 제21조는 동 규칙 제17조로 본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종 연 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종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 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 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p>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이천시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이천시장”으로 본다.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이천시장”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 	<p>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p> <p>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이천시관용차량종합관리규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p><u>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u></p>	<p><u>제3조”로 본다.</u></p> <p><u>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u></p> <p><u>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u>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처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처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면,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u>7. 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u></p>